

## UN海洋法協約에 의한 海洋汚染防止와 우리나라의 實定法

金 鎔 珍 \*

### 〈目 次〉

- |      |                                      |
|------|--------------------------------------|
| I.   | 序 論                                  |
| II.  | 條約의 施行을 위한 國內法의 整備基準                 |
| 1.   | 概 說                                  |
| 2.   | 國民에게 義務를 賦課하여야 하는 경우                 |
| 3.   | 既存의 法令과 抵觸되는 경우                      |
| 4.   | 條約의 施行을 위한 節次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5.   | 條約의 主要內容을 公告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III. | 海洋污染防止를 위한 國際協力                      |
| IV.  | 海洋污染防止에 관한 우리나라의 法令                  |
| V.   | 管轄權 範圍의 變更                           |
| 1.   | 概 說                                  |
| 2.   | 排他的經濟水域 및 大陸棚에서의 海底活動에 의한 汚染에 대한 管轄權 |
| 3.   | 地域內의 活動에 의한 汚染에 대한 管轄權               |
| 4.   | 污染物質의 投棄에 따른 汚染에 대한 管轄權              |
| 5.   | 寄港國으로의 管轄權                           |
| 6.   | 沿岸國으로의 管轄權                           |
| 7.   | 放射線物質에 대한 管轄權                        |
| 8.   | 國際海峽에서의 管轄權                          |
| 9.   | 船舶의 施設物에 대한 管轄權                      |
| VI.  | 司法節次등의 變경                            |
| 1.   | 執行機關의 制限                             |
| 2.   | 訴訟節次의 中止                             |
| 3.   | 出訴期間의 制限                             |
| 4.   | 刑罰種類의 制限                             |
| 5.   | 保釋金制의 採擇                             |
| VII. | 맺는말                                  |

---

\*法制處 法制官

## I . 序 論

1982年 12月 자마이카에서는 UN海洋法協約의 調印式이 있었다. 1973年 제3차 UN海洋法會議 제1차회의가 개최된 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성립된 이 協約은 새로운 國際海洋法秩序를 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 海洋法協約에 대하여 美國·英國·蘇聯·西獨 등의 주요국가가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하였으나, 協約의 내용중에는 深海底 開發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세계각국이 대체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協約의 중요성이 조금도 저하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協約 제308조는 60번째 國家가 批准書를 기탁한 날로 부터 12日이 경과한 후에 發效하도록 되어 있고 1989年 5月 현재 이 協約의 批准書를 기탁한 國家가 40개국을 넘었다는 점에서 그 發效가 目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協約 제309조에서는 條文에 명문의 規定이 없는 한 留保 또는例外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協約의 當事國이 되기 위하여는 명시적인 規定이 없는 한 모든 條項을 受容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 協約은 第3世界國家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들 主導國家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特定條約의 當事國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政治·經濟·社會 기타 모든 분야의 損益을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協約의 當事國이 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實定法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海洋污染防治에 관한 法令이 UN海洋法協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概觀하여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는 特定條約의 施行을 위하여 國內法을 정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하여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II . 條約의 施行을 위한 國內法의 整備基準

### 1. 概 說

우리 憲法 제5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國際平和의 유지에 관한 意志를

밝히고, 제6조 제1항은 憲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條約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은 國內法과 같은 效力を 가진다는 規定을 두고 있다. 물론 國際法과 國內法의 관계에 대하여 一元論과 二元論의 대립이 있고 前者は 다시 國際法優位論과 國內法優位論으로 나뉘고 있으나 어느 理論에 따르든 國際法이 우리나라에서 施行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어떤 條約이 우리나라에서 施行되는데 法的인 장애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條約의 施行에 따른 國內法의 整備에 관하여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아니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犯罪人引渡法(1988. 8. 5. 法律 제4015호)이 制定되어 우리나라가 外國과 체결하는 犯罪人の 引渡에 관한 條約을 우리나라가 施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는 바, 이 法律을 제정한 직접적인 동기가 어느 國家와의 犯罪人引渡에 관한 條約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條約의 施行을 위하여 國內法을 정비하는 문제에 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어떤 경우에 條約의 受容을 위하여 國內法을 정비하여야 하는 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整備事例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 2. 國民에게 義務를 賦課하여야 하는 경우

條約은 國家와 國際組織들간의 약속이다. 따라서 그 당사자는 國家와 國際組織뿐이고 權利·義務의 主體는 바로 그들이다.<sup>1)</sup> 그런데 國家 스스로가 條約의 내용에 따라 條約상의 義務를 이행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個人的 협조가 없이 條約상의 義務를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협조를 강제하기 위하여 法令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外國과 二重課稅防止에 관한 條約을 체결한다면 일정한 경우에 課稅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

1) 國家나 國際組織만이 條約의 당사국일 뿐이므로 개인은 條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물론 1945년 8월의 린던協定과 같이 第2次世界大戰의 戰犯을 처벌하기 위하여 뉴른베르그法院의 지위를 정한 것하고 개인의 처벌을 규정한 것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나 별도의 法令을 정비하지 아니한다. 이는 條約상의 義務를 이행하기 위하여 個人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고 國家가 課稅를 하지 아니하면 될 것이고 課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者는 그 條約을 근거로 자신의 利益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1984年 7月 條約 제847호로 우리나라가 當事國이 된 “船舶으로 부터의 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的 경우에는 각 當事國의 船舶이 海洋污染防止基準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國家등이 管理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基準을 지키도록 하면 될 것이나 私有의 船舶인 경우에는 條約의 當事國이 되어도 船舶所有主 등이 條約상으로 어떤 義務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86年 法律 제3905호에 의하여 海洋污染防止法을 改正하여 필요한 義務를 課하였다 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條約의 施行을 위한 法令 整備의 事例라 할 수 있다.

### 3. 既存의 法令과 저촉되는 경우

條約이 이미 施行되고 있는 法令과 저촉되는 경우 기존의 法令을 정비하여야 한다. 물론 기존의 法令과 저촉되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 제2절에서 記述한 것과 같이 國民에게 義務를 부과하기 위한 法令의 整備와 중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少年法을 改正(1988年 法律 제4057호)하였다. 이는 소위 國際人權協約 B協約으로 알려진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의 當事國이 되기 위한 준비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바로 同協約 제6조 제5항이 18세 미만의 者에 대한 死刑의宣告를 금지시키고 있는바, 종전의 우리 少年法은 16세 미만의 者까지만 死刑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既存의 法令과의 저촉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國民에게 새로운 義務를 부여하기 위한 法令의 整備라고 할 수는 없다.

### 4. 條約의 施行을 위한 節次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法律의 施行을 위하여 大統領令 등으로 필요한 節次를 정하는 것과 같이 條約의 경우도 그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節次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962年 7月 閣令 제860호 情報媒介物 保障計劃에 관한 협정시행령은 1959年 9月 條約 제49호 大韓民國과 美合衆國간의 정보매개물의 보장계획에 관한 覺書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첫째, 정보매개물의 輸入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 者의 범위를 정하고 둘째, 輸入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文教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하며 세째, 수입되는 각 종 情報媒介物의 수입에 대한 規制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法令으로 節次를 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觀點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節次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英美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상당한 認識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제1절에서 犯罪人引渡에 관한 條約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 節次를 法律로 정하여야 한다는 相對側의 主張이 있었다는 것도 이러한 認識의 차이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는바, 節次의 民主化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條約의 시행을 위한 節次도 최대한 法令化하여야 할 것이다.

### 5. 條約의 주요내용을 公告할 필요가 있는 경우

法令에는 구체적인 國民의 權利·義務에 관한 事項이나 어떤 사무에 관한 節次를 정한 것외에 國家의 중요 政策을 宣言하기 위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農業基本法·社會保障에 관한 法律·科學技術振興法 등은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國家에 主要政策을 선언하고 이를 國民에게 약속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條約에 우리나라가 當事國이 되는 경우 國民의 구체적인 權利·義務등과 관계없이 그 내용을 國民에게 알리고 國民으로 부터 協力を 구할 필요가 있다. 海洋開發基本法(1987, 法律 제3983호)도 UN海洋法協約의 발효에 즈음하여 海洋開發에 관한 政府의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力

과거 海洋은 無限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海洋의 汚染도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물론 海洋이 더럽혀지는 사실은 인정하나 海洋

스스로의 自淨力에 의하여 깨끗하여지므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石油化學產業의 발달로 海上을 통한 輸送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海難事故 특히 대형탱크船의 事故는 海洋을 심각하게 汚染시켰다. 특히 二次大戰후에 獨립한 新生國家들은 國家發展을 위한 戰略의 하나로 先進國이 獨점하던 海運業에 뛰어든 바, 이들 國家의 船員의 자질이 떨어지고 資本의 부족으로 船舶은 窽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海上交通安全自體에 관심이 많았으나 점차 海洋污染의 방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海洋污染防止에 관한 國際協力을 주도한 기관은 1948年 3月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1958年 3月 發效된 Convention on the Inter 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에 의한 IMO<sup>2)</sup> 라 할 것이다. 海洋污染의 방지를 위한 최초의 시도가 1954年 런던에서 채택된 기름에 의한 海洋污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이하 “OILPOL”이라 한다)이며 이를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기름 아닌 다른 汚染物質까지 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1973年 船舶으로부터 污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이하 “MARPOL”이라 한다)<sup>3)</sup>이다.<sup>3)</sup> 물론前述한 UN海洋法協約도 海洋污染의 防止에 관한 사항은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그 協約에서는 海洋污染의 防止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規定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의 條約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IMO에 의한 기존의 協約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IV. 海洋污染防止에 관한 우리나라의 法令

우리나라가 최초로 海洋污染防止에 관한 法令을 제정한 것은 1977年 12月 法律 제3079호로 제정된 海洋污染防止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78年 10月부터 OILPOL의 當事國이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제정된

2) 우리나라 1962年 4月 이 協約의 당사국이 되었다.

3) 우리나라 1984年 8月 이 協約의 당사국이 되었다.

것으로서 1978年 7月 부터 施行하도록 하였다.<sup>4)</sup> 이 法律은 1) 同法이 適用되는 범위를 정하고, 2) 船舶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人命의 구조를 위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기름 또는 廢棄物의 배출을 규제하며, 3) 船舶을 廢棄物의 운반에 常用하고자 할 때에는 海運港灣廳長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4) 廢油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海運港灣廳長의 許可를 받도록 하며, 5) 대량의 기름 또는 廢棄物을 배출한 者는 防除措置를 하도록 하고, 6) 内務部長官은 대량의 기름이나 廢棄物이 배출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船舶所有者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며, 7) 정부는 海洋污染防止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등에 國庫補助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法律은 1981年12月 法律 제3531호에 의하여 改正된 바 이는 1) 環境廳長은 海域別 水質基準을 정할 수 있게 하고, 2) 特別管理海域을 정한 경우 海洋污染防止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며, 3) 國務總理 소속하에 海洋污染防止審議委員會를 두도록 하였다. 1986年 12月에는 法律 제3905호로 海洋污染防止法의 제2차 改正이 있었는 바, 이는 우리나라가 MARPOL의 當事國이 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1) 규제대상인 기름의 종류에 휘발유·경유·등유 등 輕質油를 추가하고, 2) 종전의 선저폐수방지장치외에 물밸러스트 배출 방지장치·분리밸러스트탱크·화물창원유세정설비 등을 추가하도록 하며, 3) 船舶所有者는 海洋污染防止裝置에 대하여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운행검사를 받게하고 그 證明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船舶은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4) 기름기록부·廢棄物處理記錄簿의 비치의무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罰金刑을 過怠料로 조정하였다. 이 法律은 다시 1988年 12月 法律 제4052호로 第3次 改正이 있었는바 이는 1) 廢油收去 및 油艙清掃業을 하려는 者는 海運港灣廳長의 許可를 받게하고, 2) 廉油의 처리 여부에 따라 船舶의 入出港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 法律의 제정 이전에 海洋污染의 防止에 관하여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1963年 11月에 公害防止法을 제정한 바 同法은 陸上에서의 公害防止를 1次的 目的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公害物質은 海洋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海洋의 汚染에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海洋污染防止法만이 海洋污染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陸上이나 空氣중에 있는 污染物質의 상당부분은 언젠가 海洋을 더럽힐 것이 틀림없으므로 環境保全法 · 廢棄物管理法 · 下水道法도 이에 관련된다 할 수 있고 工業配置法 제6조 제2호, 제4호, 首都圈整備計劃法 제5조 제1항 제5호, 國土利用管理法 제6조 제6호, 都市計劃法 제17조 제4호, 建築法 제20조 등과 같은 個別法에서도 污染防止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法令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V. 管轄權範圍의 變更

### 1. 概 說

UN海洋法協約은 先進海洋國의 自由로운 通航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污染防止分野에 있어서도 그 規制의 정도를 상당히 강화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海洋污染防止法은 종전의 OILPOL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管轄權은 UN海洋法協約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즉 우리 海洋污染防止法은 우리나라의 管轄權을 다음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sup>5)</sup>

- 우리나라의 内水와 領海에서 모든 船舶 또는 海洋施設 등으로 부터의 海洋污染
- 海底礦物資源開發法에 의한 海底礦區의 개발과 관련한 海洋污染
- 우리나라의 船舶이 행한 海洋污染
- 海洋污染特別管理海底내에서의 海洋污染

이에 따라 우리 法律은 다음 節에서 記述하는 바와 같이 보완하는 것 UN海洋法協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할 것이다.

---

5) 同法 제3조, 同法 施行令 제4조.

## 2. 排他的經濟水域 및 大陸棚에서의 海底活動에 의한 汚染에 대한 管轄權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海洋汚染防止法은 우리 領海 밖에 있는 海底礦物資源開發法에 의한 海底礦區의 개발과 관련한 海洋汚染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UN海洋法協約 제208조 및 제214조는 排他的經濟水域 및 大陸棚에서의 海底活動으로 발생하는 海洋汚染 및 그 관할권내의 人工島嶼·施設 및 構造物로부터 발생하는 海底汚染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海底礦物資源開發法에 의한 海底礦區는 새로운 海洋法秩序에 의하면 排他的經濟水域 또는 大陸棚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海底礦物資源開發法은 石油 및 가스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法令이므로 다른 礦物의 경우에는 海洋에서도 礦業法이 적용된다고 할 수 밖에 없겠는 바 礦業法에 의한 개발의 경우에는 海洋汚染防止法을 적용한다는 規定이 없다는 점에서 海洋汚染防止法 제3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改正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排他的經濟水域 및 大陸棚에서의 海底活動에 따른 海洋汚染 및 이들 지역내의 人工島嶼·施設 및 構造物로부터 발생하는 海洋汚染

## 3. 地域內의 活動에 의한 汚染에 대한 管轄權

우리 海洋汚染防止法은 地域內의 활동을 예상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海洋法秩序는 深海底를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規定하고 地域으로 불리우는 각국의 管轄權의 밖에 있는 公海의 海底·海床 및 그 下層土의 개발과 이익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 바 우리 海洋汚染防止法이 制定될 당시에는 이의 개발에 따른 汚染에 관하여 規定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地域開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고 政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를<sup>6)</sup> 하고 있으며, UN海洋法協約 제209조에서 法令의 制定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海洋污染防止法도 이에 대한 規定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海洋污染防止法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은 號를 두어야 할 것이다.

- 國際聯合海洋法協約의 規定에 의한 地域내의 大韓民國의 船舶 · 施設 · 構造物 기타 장비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海洋污染

#### 4. 汚染物質의 投棄에 따른 污染에 대한 管轄權

우리 海洋污染防止法은 汚染物質의 排出에 관하여만 規定하고 투기(dumping)에 관하여는 規定하지 않고 汚染物質이 海洋에 들어가게되는 것은 모두 排出로 보았다. 그러나 UN海洋法協約은 排出과 投棄를 구분하여 故意的인 것은 投棄라 하여 이에 대하여는 그 관할권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同協約 제216조 제1항 나호). 즉, 海洋污染을 막기 위하여 領海밖에 있는 排他的經濟水域 또는 大陸棚에서의 投棄行爲에 대하여 沿岸國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義務化 하고 있다는 점에서 海洋污染防止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은 號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排他的經濟水域과 大陸棚으로의 排出. 다만, 外國의 船舶 · 施設 · 構造物 기타장비의 경우에는 故意的인 排出에 한한다.

뿐만 아니라 UN海洋法協約 제216조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自國의 領土內 또는 自國 沿岸碇泊施設에서 발생하는 廢棄物, 기타물질을 積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다. 이에 따라 海洋污染防止法에 이러한 行爲를 規制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UN海洋法協約에 충실히 條文化 한다면 다음과 같다.

---

6) 1989年 6月 科學技術處는 하와이 近海를 개발하기 위한 “深海底鑛區 確保計劃”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領土 · 內水 또는 沿岸碇泊施設에서의 海洋을 汚染 시키기 위한 廢棄物의 積載는 할 수 없다.

그러나 海洋汚染을 위한 廢棄物의 積載를 規制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이를 禁止시키고 위반하는 경우 處罰을 한다는 規定만 두는 것보다는 일정한 폐기물을 船舶 · 航空機등에 積載하는 者는 行政官廳에 申告하도록 하고 事後管理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이를 條文化하는 경우 다음을 예상할 수 있다.

제○○조(폐기물의 積載) ①○○○○, ○○○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폐기물을 船舶 · 航空機에 積載하는 者는 폐기물의 품명 · 수량 · 行先地 · 사용용도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地方海運港灣廳長 또는 地方航空管理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規定에 의한 폐기물은 이를 海洋에 排出할 수 없다.

물론 위의 제 1 항과 제 2 항을 위반한 者를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특히 제 2 항을 위반한 者에 대한 處罰은 다른 행위의 경우보다 중한 刑에 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5. 寄港國으로의 管轄權

우리 海洋汚染防止法은 外國船舶은 우리 領海에서의 汚染에 관하여만 관할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에 寄港중인 外國船舶의 우리 관할권 밖에 있는 海域에서의 汚染에 관하여는 規定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UN海洋法協約 제218조는 寄港國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旗國도 아니고 汚染行爲가 이루어진 海域의 沿岸國도 아니며 단순히 현재 船舶이 自國에 寄港중이라는 이유로 寄港國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우리 海洋汚染防止法에 다음의 條項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港口 또는 沿岸碇泊施設에 自意로 들어온 外國船舶이 우리나라의 內水 · 領海 또는 排他的 經濟水域의 밖에서

행한 海洋污染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다만, 外國船舶이 다른 나라의 内水 · 領海 또는 排他的經濟水域에서 汚染行爲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 法률을 適用할 수 있다.

1. 他國의 内水 · 領海 또는 排他的經濟水域에서 위반한 경우 당해 國家의 要청이 있는 때
2. 당해 船舶의 旗國의 要청이 있는 때
3. 위반행위로 인하여 損害를 입었거나 그 위험이 있는 國家의 要청이 있는 경우
4. 우리나라의 内水 · 領海 또는 排他的 經濟水域에 汚染을 발생시켰거나 그 가능성 있는 경우

## 6. 沿岸國으로의 管轄權

위에서 본 바와 같이 UN海洋法協約에 따라 우리나라의 管轄權은 領海의 以遠까지 확대되었는 바, 沿岸國으로의 管轄權도 확대되었다. 즉 우리 海洋污染防止法은 内水 · 領海와 海底礦物資源開發法에 의한 海底礦區에서의 汚染行爲만을 規制하고 있으나 海洋法協約 제 220 조에서는 沿岸國에 보다 넓은 管轄權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우리法律 제 3 조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港口 또는 沿岸碇泊施設에 들어온 外國船舶의 우리나라의 領海 또는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 海洋污染
- 우리나라의 領海를 航行하는 外國船舶의 우리나라 領海에서의 海洋污染으로서 證據가 명백한 경우
- 우리나라의 領海 또는 排他的經濟水域을 航行하는 船舶이 우리나라의 排他的經濟水域에서 汚染行爲를 한 경우. 다만 그 汚染行爲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利益이나 領海 또는 排他的經濟水域의 資源에 중대한 損害를 주거나 그 위험이 있다는 明白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한한다.

위에 따라 沿岸國으로서의 우리의 管轄權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領海를 航行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그 管轄權이 줄어든 점도 있다. 즉, 우리 海洋汚染防止法은 우리 領海의 汚染行爲에 항상 管轄權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의 各號에서 본 바와 같이 沿岸國은 領海에서 汚染行爲를 한 外國船舶이 領海를 벗어난 경우는 그 管轄權이 없다.<sup>7)</sup> 뿐만 아니라 위의 沿岸國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제2호의 관할권도 그 制約要索가 있다. 즉 UN海洋法協約 제19조 제2항 아호가 航行의 自由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故意的이고 重大한 汚染行爲만을 無害通航이 아니라고規定하고 있고, 無害通航에 대하여 沿岸國은 제재할 수 없다는 점<sup>8)</sup>에서 領海에서의 管轄權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 7. 放射線物質에 대한 管轄權

우리 海洋汚染防止法은 放射線物質에 의한 海洋汚染에 관하여는 同法律은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바<sup>9)</sup>, 이는 위험한 放射線物質의 生산·관리 및 폐기기에 관하여 原子力法이 상세하게 規定하고 있으므로 따로 海洋汚染防止法을 適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原子力法은 우리 領土에 적용하기 위하여 制定된 것이므로 海洋에 적용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즉, 原子力法에는 그 適用範圍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管轄權이 인정되는 海洋에는 당연히 原子力法이 적용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國內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는 原子力法 자체를 改正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立法技術的인 측면에서 그 한계가 크다 할 것이므로 海洋汚染防止法에서 직접 放射線物質을 規制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海洋汚染防止法에 規定하면서도 主管部署를 科學技術處로 할 수 있을 것이다.

7) 물론 故意의 투기의 경우는 관할권이 있으나 이는 UN海洋法協約 제210조 이하에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8) 朴椿浩·柳炳華, 海洋法(서울: 민음사, 1986).

9) 同法 제4조 제2항.

## 8. 國際海峽에서의 管轄權

UN海洋法協約 제233조 國際航行에 사용되는 海峽에서는 沿岸國의 管轄權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國際海峽에서의 通航의 自由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 바, 이에 따라 우리 海洋汚染防止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國際海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大韓海峽만이 國際海峽이라면 領海 밖을 통하여 通航이 가능하므로 따로 이러한 規定이 필요없다는 主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up>10)</sup>. 만약 이러한 規定을 두어야 하는 경우 다음의 條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域에 있어서는 外國船舶에 대하여 이 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軍艦이나 政府의 非商業用船舶이 아닌 船舶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 당해 海峽의 海洋環境에 중대한 被害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海峽에서의 航行의 안전과 海上交通의 規制를 위하여 制定한 法令에 위반하는 行爲
2. 당해 海峽에 油類·廢油 기타 有毒性物質의 排出을 防止·輕減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制定한 法令에 위반하는 行爲

## 9. 船舶외의 施設物에 대한 管轄權

우리 海洋汚染防止法은 우리 領海와 그 隣接水域에 있어서는 船舶외에 다른 施設物에 대하여도 規制를 하고 있으나 UN海洋法協約은 기타 海洋構造物과 航空機에 관하여도 規制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同協約 제212조는 大氣로 부터 또는 大氣를 통한 海洋의 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國의 관할하에 있는 領海에서의 適用法令을 정하고 自國 航空機에 관한 規制를 하도록 義務化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規定을

10) 물론 領海밖의 排他的經濟水域을 예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大韓海峽의 領海 以遠의 排他的經濟水域은 그 設定에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두지 않고 있으며 領土에서 適用되는 環境保全法에서도 自動車와 重機의 排出ガス에 관하여는 規制하면서 航空機에 관하여는 規制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航空法에서도 規制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한 바<sup>11)</sup>, 航空機는 大陸과 海洋을 모두 航行한다는 점에서는 航空法을 改正하는 것이 環境保全法과 海洋汚染防止法을 모두 改正하는 것보다立法技術的인 면에서 편리하다 하겠다.

## VI. 司法節次의 變更

### 1. 執行機關의 制限

우리 海洋汚染防止法은 汚染行爲를 한 外國船舶에 대한 관할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規定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現行犯은 누구나 逮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12)</sup>. 그러나 UN海洋法協約 제224조는 이를 公務員·軍人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海洋汚染防止法에서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 2. 訴訟節次의 中止

제5장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各國은 自國의 領海밖에서의 汚染行爲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UN海洋法協約 제228조 제1항은 旗國에 의하여 그러한 汚染行爲에 대한 訴訟節次가 개시되는 경우 沿岸國이나 寄港國등은 그 訴訟節次를 중지시키도록 하되 이러한 중지는 旗國의 訴訟節次가 沿岸國등의 訴訟節次의 開始日로 부터 6月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 바, 이를 條文化하는 경우 다음의 조항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1) 航空宇宙產業開發促進法(1987 法律 제3991호)에서도 航空機의 성능을 行政機關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同法律에 의하여 政府의 지원을 받는 者에 한정되고, 同法律은 일단 검사가 된 후의 사후관리도 規定하지 않고 있으므로 同法律의 검사조항에 의하여排出施設의 검사로 海洋汚染 등을 防止할 수는 없다.

12) 刑事訴訟法 제212조.

- ① 우리나라의 領海 밖에서 汚染行爲를 한 外國船舶에 대한 刑事訴訟節次는 당해 船舶의 旗國이 우리나라가 訴訟節次를 개시한 날로부터 6月이내에 訴訟節次를 개시하고 그 사실을 우리나라에 通告하며 그 사건에 관한 訴訟記錄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中止된다. 다만, 汚染行爲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중대한 損害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당해 旗國이 自國船舶이 행한 汚染行爲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 1 항의 規定에 의하면 中止된 訴訟節次는 당해 船舶의 旗國이 訴訟節次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③ 제 1 항의 規定에 의하여 訴訟節次가 中止된 污染行爲와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 기타 재정적 보증은 우리나라가 訴訟節次의 수행에 따라 지출한 경비를 船舶所有者등이 납부한 경우 해제된다.

### 3. 出訴期間의 制限

UN海洋法協約 제228조 제2항은 外國船舶의 汚染行爲에 대한 起訴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年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刑事訴訟法 제249조에 대한 特例라는 점에서 이를 海洋污染防治法에서 明示하여야 할 것이다.

### 4. 刑罰種類의 制限

UN海洋法協約 제230조 제1항, 제2항은 外國船舶의 汚染行爲에 대한 處罰은 원칙적으로 金錢刑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우리 海洋污染防治法 제59조 내지 제61조는 自由刑과 金錢刑의 선택형을 規定하고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海洋法協約의 當事國이 되는 경우 外國船舶의 汚染行爲에 대하여 自由刑을宣告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明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罰金의 上限이 2000

13) 물론 領海내에서의 重大하고 明白한 汚染行爲는 예외이다.

만원으로 美貨 3萬弗에 불과하다는 점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5. 保釋金制의 채택

우리 刑事訴訟制度는 外國人인 被疑者에 대한 保釋을 인정하여 우리나라를 出國하게 하면서도 訴訟節次를 진행하는 것을 예상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UN海洋法協約 제226조 제1항 나호는 保釋金을 납부하는 경우 신속히 釋放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條項을 두어야 할 것이다.

- ① 이 法에 위반되는 汚染行爲를 한 外國船舶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당해 船舶의 所有者등이 保釋金 기타 財政的 保證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船舶과 乘務員은 釋放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內水 또는 領海에서 故意의이고 重大한 汚染行爲를 한 乘務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船舶의 釋放이 海洋環境의 보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釋放을 하지 아니하거나 船舶修理場으로航行할 것을 조건으로 釋放할 수 있다.

### VII. 맷 는 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UN海洋法協約에 의한 海洋汚染防止制度가 우리나라의 實定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 보고, 아울러 條約을 시행하기 위하여 國內法을 정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作業은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기술적인 측면, 海洋法과 우리나라의 國益과의 관계, 우리나라 實定法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制約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글을 쓴 것은 이 글이 條約의 施行을 위한 國내法의 整備에 관한各界의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작은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글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는 海洋污染防止에 관련된 各界 各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좀 더 많은 時間과 情熱을 쏟은 후에 완성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